

시행일: 2026. 6. 1.



2026년 위험성평가, 이렇게 바뀝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요 개정 및 신설 내용

개정된 법안은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참여와 알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근로자와 함께 찾아내어, 이를 개선해 나가는 안전보건관리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

위험성평가 핵심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실행

*단계마다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것을 개선하는 일상적인 활동이 곧 위험성평가입니다.



01 | 실시 의무 강화

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 크기를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합니다.



02 |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 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03 | 근로자대표 참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경우,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04 | 공유 및 주지

평가 결과를 교육, 게시판, 서면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히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은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05 | 기록·보존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적용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법률	위반 내용	과태료 부과액
제36조제1항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	최대 1,000만원
제36조제2항 및 3항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 위반	최대 500만원
제36조제4항	위험성평가 결과 등 공유 의무 위반	최대 500만원
제36조제5항	기록·보존 의무 위반	최대 3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관련 법령 한눈에 보기

01 | 실시 의무 강화 제36조 제1항

-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02 | 근로자 참여 제36조 제2항

-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03 | 근로자대표 참여 제36조 제3항

-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04 | 공유 및 주지 제36조 제4항

-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05 | 기록·보존 제36조 제5항

-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